

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경찰위원회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8개 시·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법률상 기구로서 추천 시부터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)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국가경찰위원회 자체 대통령령에 이를 명시, 제19조의 규범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) ① 국가경찰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2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식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로, “혁신기획조정담당관”을 “정책지원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5조의2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) ① 국가경찰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 <u>1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</u> <u>2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식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
제8조(간사)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경찰청 <u>혁신기획조정담당관</u>이 된다.	제8조(간사)① ----- 1명-- , ----- <u>정책지원담당관</u>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정책지원담당관	
연락처	02 - 3150 - 3117